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396 호 2023. 4. 13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70회[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71회[도시계획시설(소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73회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75회[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]..... 5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521회[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.....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522회[공 시 송 달 공 고]..... 23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547회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과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70호

울산광역시 복구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울산광역시 복구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

1. 공중화장실 교체·개축 계획

(단위: 개소, 백만원)

구분	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계	24	4	4	5	6	5
교체	3	-	1	2	-	-
개축(리모델링)	9	2	1	-	3	3
개방화장실(민간)	12	2	2	3	3	2
소요예산	930	160	150	140	240	240

2. 교체, 개축 및 관리를 위한 연차별 사업비 조달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'22.12월 현재		2023년		2024년		2025년		2026년		2027년		
	개소	예산액	개소	예산액	개소	예산액	개소	예산액	개소	예산액	개소	예산액	
계	38(1)	540	38(2)	678	38(2)	679	38(2)	680	38(3)	791	38(3)	802	
교체	1	53	-	-	1	70	2	140	-	-	-	-	
개축 (리모델링)	-	-	2	160	1	80	-	-	3	240	3	240	
유지관리	38	487	38	518	38	529	38	540	38	551	38	562	
계(현황)	277	8.1	279	9.9	281	11.7	284	14.4	287	17.1	289	18.9	
공공	소계	202	-	202	-	202	-	202	-	202	-	202	
	공공용 시설	171	-	171	-	171	-	171	-	171	-	171	
	관광, 체육 시설	31	-	31	-	31	-	31	-	31	-	31	
민간	소계	75	8.1	77	9.9	79	11.7	82	14.4	85	17.1	87	18.9
	마트	18	-	18	-	18	-	18	-	18	-	18	
	주유소	42	-	42	-	42	-	42	-	42	-	42	
	개방 화장실 (민간)	9	8.1	11	9.9	13	11.7	16	14.4	19	17.1	21	18.9
	기타	6	-	6	-	6	-	6	-	6	-	6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71호

도시계획시설(소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도시계획시설(소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사업
나. 명 칭: 이화·화정 숲대마당 조성사업
2. 위 치: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1166-49번지 일원
3. 사업규모: 공원조성(소공원145) A= 454.4m²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: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나. 주 소: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
5. 사업기간
가. 실시계획인가일 ~ 2023. 12. 31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: 붙임 명세서와 같음
7. 열람기간: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8. 열람장소: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
9.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(☎052-241-862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북구중산동												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지분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관리관계	
1	중산동	1166-49	전	327.2	327.2		울산광역시 북구					
2	중산동	1166-123	도	42.3	42.3		국(건설부)					
3	중산동	1166-127	전	84.9	84.9		울산광역시 북구					
합계				454.4	454.4						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73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소재지 지번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호계1길 19	호계동 638-7	2023. 4. 13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283)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4. 1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75호

울산광역시 복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고 시 일 : 2022. 4. 13.
2. 고시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, 게시판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(중산공업로)
※ 붙임(조서 및 도면) 참조
4. 변경사유 : 도로구간 (주도로) 연장 설정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(☎052-241-728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.

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

구분	도로명	도로구간			길이 (m)	폭 (m)	위계	기초간격	기초번호	변경사유	관할 행정구역
		시점	종점	중심선							
변경전	중산공업로	매곡동 산40-10	중산동 228-3	도면 참조	1,880	30	로	20	1~188	주도로 연장설정	농소2동
변경후	중산공업로	매곡동 산40-10	중산동 산26-1	도면 참조	3,430	30	로	20	1~344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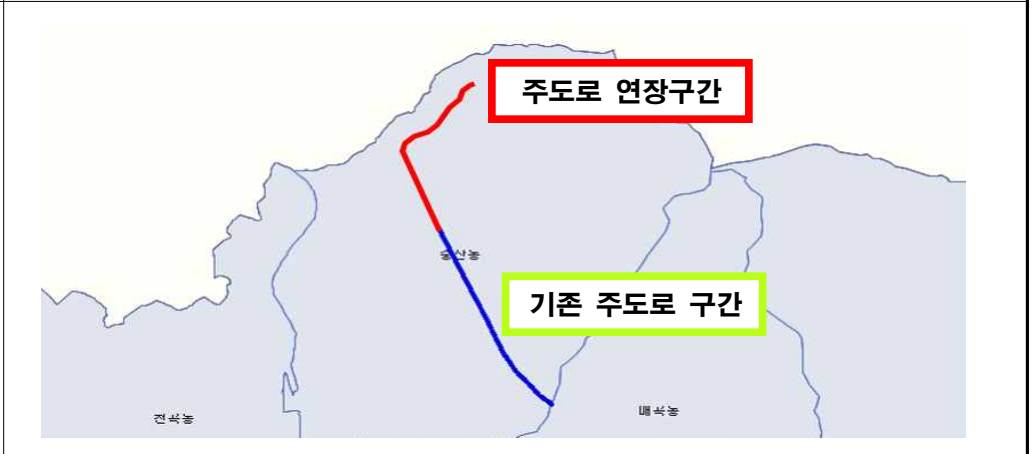
현황도면 (변경 전)

현황도면 (변경 후)



도로명주소 기본도 (변경 전)

도로명주소 기본도 (변경 후)

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- 521호

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인 「지하수법」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7조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8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6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24조
- 나. 「지하수법」 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, 제27조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참조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. 5. 3.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농수산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 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
 - 전화번호 : 052-241-8055, 팩스번호 : 052-241-805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농어촌정비법시행령」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24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울산광역시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울산광역시 복구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촌용수”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, 농업용수,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(지표수 및 지하수)를 말한다.
2. “농촌용수구역”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·수계별 단위를 말한다. 이 경우 농촌용수 구역별·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.

☞ 정의 조항은 항(①,②)이 아닌 호(1. 2.)로 표시하며, 규정 순서도 농촌용수, 농촌용수 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수정.

제3조제1항 중 “울산광역시복구청장”를 “울산광역시 복구청장”으로 하고, “각 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년 1회이상”을 “연 1회 이상”으로 한다.

☞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추가

제6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”을 “「지하수법」 제27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년 1회이상”을 “연 1회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지하수법시행령」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수위관측망”을 “측정망”으로 하며, “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”를 “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북구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구”를 “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, “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☞ 이후 조문(제15조)에도 “구”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약칭 추가

제14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

에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제1항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농어촌정비법 시행령</u>」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<u>울산광역시북구</u>(이하 “구”라 한다) <u>농촌용수구역</u>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<u>농촌용수구역</u>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·이용·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농어촌정비법 시행령</u>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<u>울산광역시 북구</u> -----</p>
<p>제2조(정의 및 범위) ① <u>농촌용수구역</u>이란 <u>농촌용수</u>를 공급하기 위한 <u>농촌용수공급계획</u>상의 <u>구역별·수계별</u> 단위를 말한다.</p> <p>② <u>농촌용수</u>라 함은 <u>농촌지역</u>에 필요한 <u>생활용수</u>, <u>농업용수</u>, <u>공업용수</u>와 <u>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</u>(<u>지표수</u> 및 <u>지하수</u>)를 말한다.</p> <p>③ <u>농촌용수</u> <u>구역별·수계별</u>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<u>간접유역</u>을 포함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농촌용수</u>”란 <u>농촌지역</u>에 필요한 <u>생활용수</u>, <u>농업용수</u>, <u>공업용수</u>와 <u>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</u>(<u>지표수</u> 및 <u>지하수</u>)를 말한다.</p> <p>2. “<u>농촌용수구역</u>”이란 <u>농촌용수</u>를 공급하기 위한 <u>농촌용수공급계획</u>상의 <u>구역별·수계별</u> 단위를 말한다. 이 경우 <u>농촌용수</u> <u>구역별·수계별</u>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<u>간접유역</u>을 포함한다.</p>
<p>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<u>울산광역시</u></p>	<p>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<u>울산광역시</u></p>

시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

② (생략)

제4조(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

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농촌용수의 오염방지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용수시설물의 관리) ① 구청장은

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시설물 관리대장에 의거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

시 북구청장-----
----- 각 호-----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

① -----
-----연 1회 이상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농촌용수의 오염방지) ① (생략)

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 「지하수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-----
-----.

제7조(용수시설물의 관리) ① -----

----- 각 호-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연 1회 이상

② 구청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·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8조(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 농정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

② -----
----- 그 밖의 -----

-----.

③ -----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-----
----- 측정망 -----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8조(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-----
-----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-----
-----.

② -----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각 호-----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그 밖에 -----

사항

제10조(회의록) ① (생략)
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)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 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.

② (생략)

제16조(용수구역의 관리협약) ① (생략)
 ② 제1항에 의거 관계기관 협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
 ② -----
 ----- 그 밖에 -----
 -----.

제12조(수당 등)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-----
 ----- 범위에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-----
 -----.

제14조(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) ① -----

 ----- 각 호-----
 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그 밖에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용수구역의 관리협약) ① (현행과 같음)
 ② 제1항에 따라 -----

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

제24조(농어촌용수구역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(流域)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.

1. 농지,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
2. 소하천(「하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)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1.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
2.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
3.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\
4.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

③ 시·군·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1. 농어촌용수의 이용·배분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
2. 농어촌용수의 보전·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·조작에 관한 사항
3. 농어촌용수의 보전·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

□ 「지하수법」

제27조(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)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하수법 시행령」

제6조의2(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.

1. 지하수의 위치·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
2. 지하수의 이용자·용도·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
3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깊이·지름·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
4.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
5.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 현황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27조(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. 다만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,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현행규정

□ 「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시행령」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·이용·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08·9·16>

제2조(정의 및 범위)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·수계별 단위를 말한다.

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, 농업용수,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(지표수 및 지하수)를 말한다.

③ 농촌용수 구역별·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.

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
2.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
3.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
4. 농촌용수시설의 관리
5.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, 학술단체,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(농촌용수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, 농촌용수 공급, 운영방안 및 지표수·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·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

야 한다.

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·관리하고, 매 5년마다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농촌용수의 오염방지)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, 정기적 수질검사, 오염관측망 설치운영, 오염유발시설의 개선·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용수시설물의 관리)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·수량 등 관리지침 작성
2.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
3. 시설물 관리대장에 의거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

② 구청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·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「지하수법시행령」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. <개정 08·9·16>

제8조(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
2.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
3.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
4.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
5.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반기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회의록)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심의사항 준수)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08·9·16>

제13조(운영규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)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.
2.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.
3.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.
4.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.

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5조(사용제한 등의 공고)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·기간·구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6조(용수구역의 관리협약)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거 관계기관 협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<08·9·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-522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하천, 소하천, 공유수면 구역 내 「하천법」 제33조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6조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,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7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**공고내용:** 하천, 소하천, 공유수면 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**공고기간:** 2023. 4. 10. ~ 2023. 4. 16. (7일간)
3. **공고장소:**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4. **무단점유 현황**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비 고
소 재 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㎡)	
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	437-25번지	미상	미상	경작	165	
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	892-30번지	미상	미상	경작	500	
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	1120-1번지	미상	미상	공작물 설치, 경작	260	
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	1208-2번지	미상	미상	경작	140	
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	1166-17번지	미상	미상	공작물 설치, 경작	320	
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	1178-54번지	미상	미상	경작	447	
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	762-3번지	미상	미상	경작	80	
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	776-1번지	미상	미상	경작	198	
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	776-3번지	미상	미상	경작	147	
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	638-1번지	미상	미상	경작	270	
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	637-4번지	미상	미상	경작	23	
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	637-5번지	미상	미상	경작	172	
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	742-4번지	미상	미상	경작	630	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비 고
소 재 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㎡)	
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	1204-13번지	미상	미상	경작	30	
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	453-1번지	미상	미상	경작	158	
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	642-2번지	미상	미상	경작	88	
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	771번지	미상	미상	경작	92	
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	771-9번지	미상	미상	경작	140	
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	114번지	미상	미상	경작	157	
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	961-35번지	미상	미상	경작	50	
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	795-192번지	미상	미상	무단 적치	1	
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	1473번지	미상	미상	경작	470	
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	1441-1번지	미상	미상	경작	255	
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	771-17번지	미상	미상	경작	132	
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	958-38번지	미상	미상	경작	183	

5. 공시송달내용

「하천법」 제33조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, 2023. 4. 16.(일)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이행 시 「하천법」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7조에

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- 547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4월 1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,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타 구·군 간 위원구성 동일성 및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심의·자문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,
- 준용 조례명 현행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위원 변경(안 제8조)

- 당연직 : (당초) 부서장 → (변경) 국장
- 간 사 : (당초)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 → (변경) 부서장

나. 준용 조례명 현행화(안 제18조)

- (당초)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

- (변경)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3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(수)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경제일자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라. 제출처

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

2) 전화번호 : 052)241-7276, 팩스번호 : 052)241-77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[붙임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	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 소		
개인정보취급	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	
검토의견 (의견제출내용)			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			
2023년 월 일			
제출자		(서명 또는 인)	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			

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당연직”을 “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”으로 하고, “부서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두되”를 “두며”로 하고, “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”를 “부서장이 된다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(생략)</p> <p>③ <u>당연직</u>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<u>부서장이</u>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<u>구청장이</u>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<u>두되</u>,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<u>공무원</u> 중에서 <u>구청장이</u> 지명한다.</p>	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</u> ----- <u>국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두며</u>, ----- ----- <u>부서장이</u> <u>된다.</u></p>
<p>제18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<u>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</p>	<p>제18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」 ----- -----.</p>

현행 규정

□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·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·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적경제”란 양극화 해소,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,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,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·연대를 바탕으로 생산, 교환,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.
2. “사회적경제조직”이란 사회적경제기업,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말한다.
3. “사회적경제기업”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구매·생산·판매·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
 - 가.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울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
 - 나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
 - 다.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
 - 라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4. “중간지원조직”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연계,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,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.
5. “사회적경제연대조직”이란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.
6. “사회적경제 생태계”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,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,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·협력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)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할 것
2.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 되도록 노력 할 것
3.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
4.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할 것
5.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가 조성 되도록 노력 할 것

제5조(다른조례와의 관계)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.

제6조(사회적경제활성화 시행계획)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

3.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
4.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5. 사회적경제정책의 예산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6.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장 사회적경제위원회

제7조(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사회적경제 정책·사업의 수립 및 집행
2.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
3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
4.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및 민관협력
5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.

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2.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, 현장활동가, 중간지원조직의 대표
3.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

제13조(교육훈련 지원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.

1.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
2.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

3. 사회적경제 조직에 소속된 사람

4.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4조(경영지원) 구청장은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·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재정지원)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

2.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훈련

3.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지원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울산광역시북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16조(홍보 등)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

2.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

제17조(우선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)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

제18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울산광역시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1. 시행계획 수립 지원

2.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·심사 및 감독지원

3.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지원
4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지원
5.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
6.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
7.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
8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.

제19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
제20조(포상)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, 단체, 기관,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.

부칙<제1166호, 20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.

1.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
2.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